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

2023. 2. .

국 토 교 통 부 (녹 색 도 시 과)

#### 1. 개정이유

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, 도시·군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연차별 지원항목을 조정하며, 주민 지원사업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,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(안 제2조)

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·의료·금융· 문화 등 편의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

- 나. 도시·군계획시설 주민지원사업의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(안 제4조제3항) 주민지원사업이 도시·군계획시설로 추진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차 연도에는 설계비만, 2차 연도에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신청하도록 조정하고, 사업 추진단계, 사업 규모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
- 다.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산출의 객관성 확보(안 제6조제3항)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근거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

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행정예고 전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

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"를 "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27조"로 한다.

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절차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지원대상)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
- 2. 개발제한구역(이하 "구역"이라 한다)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건·의료·금융·문화 등 편의지원사업(이하 "찾아가는 교 통약자 편의지원사업"이라 한다)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 업

제3조 앞에 "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"를 삭제한다. 제3조 중 "시장 등"을 "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 등"이라 한다)" 으로 한다. 제4조제3항 후단 중 "설계비와 보상비"를 "설계비"로, "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"를 "보상비와 공사비"로, "있다"를 "있다. 다만 사업 추진단계,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·군계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에 토지 등의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 지침 제34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원칙,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제1항 중 "지정당시거주세대"를 "지정당시거주세대(신청일 현재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요건을 갖춘 세대)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_	5	_	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<u>「개발제</u>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6조, 같은 법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
#### <신 설>

- 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주민지원사업"이란 시장· 군수·구청장(이하 "시장 등 "이라 한다)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 역(이하 "구역"이라 한다) 주 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 사업, 복지증진사업, 생활비용 보조사업, 소득증대사업과 그 밖의 연구·조사사업을 말한 다.
  - 2. "지정당시거주세대"란 「개 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

개 정 안

제1조(목적) ----- <u>「개발제</u> 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 다)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(이 하 "영"이라 한다) 제27조----

---

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절차

제2조(지원대상)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 제1항에 따른 사업
- 2. 개발제한구역(이하 "구역"이라 한다) 내에서 고령자 등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

관한 특별조치법」(이하 "법 "이라 한다)제16조의2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의 신청일 현 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 부가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 "이라 한다)제18조제2항제3호 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 춘 세대를 말한다.

제2장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절차

제4조(지원기준) ①・② (생 략)

③ 주민지원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호에 따라 도시·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경우 2년 이상 장기계속 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1차 연도 에는 설계비와 보상비만 신청하

#### <삭 제>

<u>시</u>
장・군수・구청장(이하 "시장
<u>등"이라 한다)</u>
제4조(지원기준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<u>설계비</u>

여야 하고, 2차 연도에는 보상 이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비를 신청할 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・군계 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 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출 등) ① (생 략)

② 주민지원사업의 생활편익사 업, 복지증진사업, 소득증대사 업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토지 허가 등을 마친 사업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설계, 인 · 허가 등을 필요하지 아니하 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 설>

비와 공사비---------- 있다. 다만 사업 추진단계, 사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연차별 지원항목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 <삭 제>

제6조(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 제6조(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제 출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・군계 획시설이 아닌 기반시설을 주민 사용 승낙을 득하고 설계, 인 ·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전 에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 동의서 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수립

제9조(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) 제9조(생활비용보조사업 절차 등) ① 생활비용의 보조는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영 제27조의2 제1 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에게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<u>할 경우에는 예비</u>타당성조사 수 행 총괄지침 제34조에 따른 총 사업비 산정원칙, 건설기술진흥 업무 운영규정 제88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등 을 참조하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 후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----- 지정당시거 주세대(신청일 현재 세대주 또 는 세대원 중 일부가 영 제18조 제2항제3호의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을 갖춘 세대) ---.
  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